연명의료 결정제도

대전효감주간보호센터
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
○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

연명의료결정법은 '임종과정에 있는 환자'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(傷病)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,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

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.

-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
-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
-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

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.

▶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

▶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

"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"

연명의료결정제도

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
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**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**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
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2018. 2. 4.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시행)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?

1. **등록기관 방문**
 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**직접 방문하여** 작성
2. **본인 확인**
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)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
3. **상담 및 작성**
   1: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, 안내에 따라 작성
4. **등록 및 효력 발생**
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**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**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

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대표전화 1855-0075)